##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와 더불어 불멸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

김 희 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걸출한 수령,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시다.

세계에는 인민대중의 운명개척과 세계정치사에 흔적을 남긴 이름있는 위인들과 정치가들이 많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탁월한 사상과 령도, 고매한 덕망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걸출한수령,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는 없었다.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에도 력력히 어리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존중시하고 철저히 지켜주는 원칙에서 인민대중에게 가장 공정하고 평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주고있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이다.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와 더불어 불멸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무엇보다먼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공화국 선거제도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여주신것이다.

우리 공화국선거제도의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성격은 자기의 고유한 력사적뿌리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지난 시기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의 선거제도는 해당 국가창건과 관련하여 제정된 헌법에서 선거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것을 선거법이나 선거규정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확립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던 1930년대 전반기 두만강연안 유격근거지에서 우리 국가정권의 원형으로 될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정에 공화국선거제도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유격근거지에서 민주주의선거의 근본원칙을 규정한 인 민혁명정부정강의 제정실시를 통하여 우리 공화국선거제도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여 주시였다.

유격근거지에서는 조선인민의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도 허용하지 않은 일제의 식민지 악법을 무효로 선포하고 그에 의하여 유지되여오던 모든 법률제도와 법질서를 철저히 청 산함으로써 민주주의선거의 선결조건을 마련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유격근거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민혁명정부의 당면과 업을 구체화하여 정부정강을 제정실시하였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과업들을 규정하고있는 혁명정부정강에는 선거와 관련한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져있었다. 그에 의하면 인민혁명정부의 통제구역에 있는 16살이상의 모든 로동자, 농민, 병사, 지휘관 및 학생, 상인, 반일군중 및 그들의 가족은 남녀, 종족, 종교, 신앙의 차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매국적민족반역자, 반혁명분자들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박탈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민주주의선거의 근본원칙을 규제한것으로서 공 화국선거제도의 력사적뿌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유격근거지에서 유격구 전체 인민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민주주의적선거실시과정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선거제도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사수평에서 진행된 선거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민주주의적선거였으며 정치적권리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였다.

인민혁명정부수립을 위한 선거는 유격구내 전체 인민들의 참가밑에 두만강연안유격 구의 모든 지역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왕청현과 연길현, 훈춘현, 화룡현의 유격구들 에서 민주주의적선거가 진행되여 구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되였다.

두만강연안유격구들에서 종파사대주의자들과의 투쟁속에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기 위한 선거진행과정에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공화국선거제도의 기틀이 마련되고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의 선거제도의 전통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만강연안유격구에 인민의 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인민들속에서 해설선전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선거가 실지로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시는 한편 반일인민유격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수립하여유격구를 철저히 보위함으로써 선거를 원만히 진행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시였다. 이것은 선거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준비사업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귀중한 경험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여주신 민주주의적선거의 실천적경험은 공화국선거제도를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로 확립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이것이 바로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우리 국가창건의 기초로, 공화국 선거제도의 바탕으로 되였다.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와 더불어 불멸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다음으로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을 반영한 인민적 이고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하여주신것이다.

해방전 우리 인민은 장구한 기간 봉건적통치와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밑에서 그어떤 정치적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착취와 억압만을 받아왔다. 해방을 맞이한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정치적권리, 그중에서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지니고 자기손으로 자기의 참다운 대표를 선거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공화국북반부에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를 수립하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위원회에 합법적성격을 부여하기 위한 첫 민주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우리 인민들의 정치적권리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에서 실시된 인민혁명정 부선거경험에 토대하여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를 수립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5(1946)년 3월 23일에 하신 방송연설《20개조정강》과 주체35(1946)년 9월 5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2차확대위원회에서 하신 결론《선거규정을 정확히 집행하며 도인민위원회사업에서 규률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9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북조선 면, 군, 시 및 도인민위원회 위원선거에 관한 규정》이 채택되였다.

선거규정에서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과 비밀투표의 방법을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으로 명백히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선거자명부작성절차와 선거구, 선거분구, 선거위원회조직질서, 후보자추천절차, 투표방법과 선거결과확정질서 등 선거의 조직실시와 관련한 문제들도 구체적이면서 정확하게 규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가 확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하여주심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주는 법적, 제도적담보 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력사적인 우리 공화국의 첫 민주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 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거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선거위원회를 조직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주체35(1946)년 9월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가 조직되였으며 9월 말까지 도, 시, 군, 구, 분구선거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인민이 높은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체35(1946)년 9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으로 선거선전의 거점으로서 선전실을 각 선거구 및 분구들에 꾸리고 각급 인민위원회와 각 정당, 사회단체들을 적극발동하여 선거선전사업을 벌리도록 혁명적인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첫 민주선거를 파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거규정을 통하여 친일분자들에게서 선거권을 박탈한다는것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첫 선거의 계급적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꼬임수에 넘어가 선거에 참가하지 않기로 하였던 목사들을 만나시고 그들이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선거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거를 반대하는 반동들의 준동을 결정적으로 짓부시고 인민들의 정치적열의를 더한층 끌어올리기 위하여 선거날을 하루 앞둔 날에 북조선 각지에서 민주선거를 경축하는 군중시위를 일제히 가지며 평양에서는 그보다 하루 앞당겨 11월 1일에 선거경축대회를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적인 우리 공화국의 첫 민주선거를 위한 준비 사업은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으며 주체35(1946)년 11월 3일 드디여 도,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는 전체 선거자의 99.6%가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선거참가자의 절대다수가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세심한 지도밑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우리 공화국의 첫 민주선거를 통하여 우리 인민들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정권을 세워보려던 절절한 념원을 실현할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우리 선거제도의 우월성이 온 세상에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와 더불어 불멸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다음으로 우리의 선거제도를 우리 인민이 자기의 정치 적권리를 보다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발전완성시켜주신것이다.

선거제도를 혁명발전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의 정치적권 리실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혁명이 전진하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람들 이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성장하며 그에 따라 인민대중의 정치적요구가 보다 높아지기때 문이다.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민주주의선거제도를 공고화한 인민민주주의헌법과 그에 기초한 여러 선거규정들의 제정실시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 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선거법들의 채택실시를 통하여 더욱 공 고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선거제도가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인민대중의 정치적자주성을 철저히 실현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로 되도록 더욱 발전완성시켜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선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선거나이를 시대적요구에 맞게 점차 낮추도록 하시였다.

선거나이를 옳바로 규정하는것은 해당 선거제도의 민주주의적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징표이다. 선거나이가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청년학생들을 포함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가 실현되는 범위가 확정된다.

우리 공화국의 첫 선거제도인 인민민주주의선거제도에서 선거참가나이는 20살로 규정되여있었다. 이것은 당시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적수준과 정치정세의 요구를 반영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민주주의혁명과 3년간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단련육성된 우리의 청년들이 국가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선거나이를 점차 낮추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의선거제도에서 선거참가나이는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에 18살로,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시기에는 17살로 규정되였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민주주의선거제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거참가나 이와 선거받는 나이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여본적이 없다. 선거참가나이가 성인이 되는 나 이와 동일시되고 선거참가나이와 선거받는 나이에서 차이를 설정하지 않은 바로 여기에 우리 공화국선거제도의 우월성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

선거나이가 옳바로 규정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보다 더 많은 공민들이 나이의 제 한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충분히 행사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한다. 일반공 민들은 물론이고 사회보장자들과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들을 포함하여 공화국령역안의 모 든 공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한다. 다른 나라에 살고있는 공화국공민들도 조국에 머무르는 기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희망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국가정치실현의 담당자인 주권기관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시였다.

주권기관의 임기를 몇년으로 하는가 하는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조직된 주권기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선거사업의 조직진행과 관련되는 중요한문제이다. 국가기관의 임기를 너무 짧게 정하면 조직된 주권기관이 자기 사업을 진행할시간적여유가 없어져 사업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수 없고 주권기관선거를 자주 진행해야 하는 페단이 나타나게 되며 반대로 주권기관의 임기를 너무 길게 정하면 주권기관이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높여나가는데서 일정한 지장을 받게 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규정되였다. 주체37(1948)년 우리 공화국의 첫 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임기를 3년으로, 주체43(1954)년 10월에 수정된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임기를 4년으로, 주체81(1992)년에 수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부터 최고인민회의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였다. 사회주의기초 건설시기 3년으로 규정하였던 지방인민회의임기는 현재 4년으로 규정되였다.

주권기관의 임기가 합리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우리의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선거제도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투표방법을 보다 완성하도록 하시였다.

선거에서 실제적공정은 투표이다. 투표는 선거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계기이며 선거권을 행사하는 결정적순간이다. 투표는 선거의 전과정에서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선거와 관련한 모든 사업은 사실상 투표를 위하여 조직되고 진행된다고 말할수 있다.

현재 우리 공화국선거제도에서 투표는 한개의 선거함을 놓고 진행하도록 규제하고있다. 선거자들은 선거표에 적혀있는 후보자에 대하여 찬성을 하면 표식을 하지 않고 반대하면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 긋는 방법으로 표식을 하고 선거표를 선거함에 넣는다. 이것은 투표의 편리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매우 실리있는 투표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후보자추천절차와 방법, 선거구와 선거위원회의 조직, 재선거와 보충선거를 비롯하여 선거제도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더욱 발전완성시켜주심으로써 우리의 선거제도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한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선거제도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워지고 발전완성된 우리의 선거제도는 수령중심의 일심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인민정권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으로 하여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로서의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우리는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광명한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선거제도, 업적